

고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
(의안번호 제594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	1999. 11. 19	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	1999. 11. 19	
다. 상 정 일 자 :	1999. 11. 26	산업건설위원회 상정
라. 의 결 일 자 :	1999. 11. 27	산업건설위원회 의결

2. 개정이유

-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피처분자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부여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과태료 처분자에 대한 의견진술 조항 신설(안 제3조의2)
  -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함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조례안은 1990. 10. 13 조례 제1223호로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금번 개정이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공공시설물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피처분자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부여하고 피처분자의 고충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 : 1999. 11. 2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